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자 제재 다양화 등 〉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93호)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0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사회복지요원 출퇴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박선원 의원안) ...	4
2. 사회복지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다양화(박선원·임종득 의원안) ..	7
3. 형사처벌 대상 근무지 이탈 횟수 축소(임종득 의원안)	16

I. 제안경위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3호)

가. 발 의 자 : 박선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7.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10.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02호)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3호)

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이 출근 시에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 복무 상황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관리·감독 방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태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항).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02호)

현행법은 사회복지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지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지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 89조의3).

Ⅲ. 검토의견

1. 사회복지요원 출퇴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박선원 의원안)

- ☐ 개정안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 · 감독 등) ①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 · 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현재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된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상황 등을 기록하기 위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개인별 복무 상황을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지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¹⁾

1)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

- 이와 같은 수기 방식의 사회복지요원 복무 현황 관리는 복무 상황 관리자에 따라 기록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낮을 우려가 있고, 이력 보존 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복무 현황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 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기 관리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복무기관 간 복무 현황 관리 업무가 통일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²⁾
- 다만, 「병역법」상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관리 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1조의2제2항 조문 중 ‘소속기관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 대상으로 ‘출퇴근 내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퇴근 외에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 복무관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호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지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각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않은 지각·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각·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추계 : 약 6억원 소요 예상(병무청 설명)

- 개발용역비 : 약 1억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 약 3억원, 하드웨어 구입비 : 약 2억원

□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³⁾이 기 발의되어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220723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됨.

2. 사회복지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다양화(박선원·임종득 의원안)

□ 현행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이탈 외에 기타 복무의무 위반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일률적으로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으나, 개정안들은 경고처분을 하면서 연가(휴가) 단축, 보수감액(감봉) 또는 연장복무 등 제재처분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박선원 의원안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략) ② 사회복지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경고처분</u>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33조(사회복지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경고처분</u> 한다. <u><단서 삭제></u> 1. ~ 7. (현행과 같음) ③ <u>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u>

현행	박선원 의원안
④ (생략)	1. 연장복무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3.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주의는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임종득 의원안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생략)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	제32조(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

현행	입종득 의원안
여 제33조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된 경우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u><신 설></u>	--- 제33조제3항----- -----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u>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연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연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경고처분 1회에 5일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u> 2. <u>보수감액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처분 1회에 1개월을 적용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u> 3. <u>연장복무란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 ----- ----- <u>연가단축, 보수감액 또는 5일을 연장복무하게</u> -----. ----- -----.
① (생략) ② <u>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u>	

현행	입종득 의원안
1. ~ 7. (생략) <u><신설></u> ④ (생략)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지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3항 ----- ----- 3.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3조4)에서는 사회복지복무요원의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수

- 4)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지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②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지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으로서 복무이탈의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기타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음.

□ 현재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복무의무 위반자 발생 현황('20 ~ '25. 10월) >

(매년 12.31.기준/단위: 명, %)

구 분	'25. 10월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복무인원(A)	44,626	45,213	49,130	53,214	57,769	56,306

복 무 의 무 위 반	연장	731	961	1,026	1,077	915	1,180
	고발	10	20	12	10	9	11
	계(B)	741	981	1,038	1,087	924	1,191
% (B/A)		1.7	2.1	2.1	2.0	1.6	2.1

* 복무의무위반자는 매년 2.0% 수준으로 지속 발생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복무이탈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어, 복무기관의 행정·재정적 부담⁵⁾을 가중시키는 한편 제재의 비례성 측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들은 사회복무요원의 기타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 현재 연장복무로만 되어 있는 것을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으로 제재처분을 다양화하려는 것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체감하는 불이익 유형을 다양화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복무기관의 관리 및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음으로, 두 개정안간 구체적인 내용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함.

5) 2024년 기준 소집해제자 30,011명 중 복무기간 연장 처분자 1,161명의 총 복무 연장일수 20,297일에 대해 약 11억원의 보수 지급

구분	현행	박선원의원안	임종득의원안
제재수단 조치 의무화 여부	규정	미규정	규정
제재수단 종류	연장복무(5일)	연장복무(기간 미규정)	연장복무(5일)
		감봉 (보수 1/5, 1~3월)	보수감액 (보수 1/5, 1월, 총 3월)
		휴가단축 (5일 이내, 총 15일)	연가단축(5일, 총 15일)
		주의	미규정
형사처벌자 연장복무 적용 여부	미적용	적용	미적용
구체적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 여부	미규정	미규정	규정
부칙(적용례)	-	시행 후 발생한 사유부터	시행 후 최초로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첫째, 제재수단 조치 의무화 여부와 관련하여 박선원의원안은 ‘경고처분시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규정한 반면, 임종득의원안은 ‘연가단축, 보수감액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라고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음.

둘째,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박선원의원안은 연장복무 일수를 미규정하고 있으나, 임종득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박선원의원안의 제재수단에는 ‘주의’가 추가로 규정되어 있음.

셋째, 형사처벌자 연장복무 적용과 관련하여 박선원의원안은 형사처벌 대상자도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종득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자는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받

지 않도록 하고 있음.

넷째,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하여 박선원의원안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부터로 하고 있으나, 임종득의원안은 법 시행 후 경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복수의 제재수단으로 제재 체계를 다양화하고 있어 처분권자에게 제재수단 선택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바, 그 결과 복무의무 위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재가 부과될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연장복무, 연가단축 및 감봉은 제재의 법적 성격(신체의 자유, 휴식권, 재산권 제한 등)과 당사자가 체감하는 불이익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이를 동일한 제재수단으로 병렬적⁶⁾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유사 사안에 대한 처분의 편차 및 자의적 운영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고, 제재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재의 비례성·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재 처분권자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수단의 적용 기준, 적용순서 및 절차적 보완 장치 등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등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

6) 병무청은 연가단축→보수감액→연장복무→고발 순서를 예정하고 있음.

과 동시에 복무기관의 관리 및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3. 형사처벌 대상 근무지 이탈 횟수 축소(임종득 의원안)

□ 현행은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이하 ‘무단이탈’이라 함)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 ----- ----- ----- -.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 제33조제3항----- ----- -----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2. 제33조제2항----- ----- ----- -----

현행	개정안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u>제33조제2항제3호의2</u>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신 설> 3. <u>제33조제2항제7호</u>, <u>제33조의10제2항제8호</u>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생략)	----- ----- ----- -----. ----- <u>제33조제3항</u>----- -----. 3. <u>제33조제3항제7호</u>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5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u>제33조의10제2항제8호</u> ----- ----- ----- ----- ----- ----- -----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 현행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89조의37)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연도별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의무위반 현황을 보면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무단이탈 사유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요원 무단이탈 사유 경고처분 현황 >

(매년 12.31.기준/단위: 건)

구 분	'26.1.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전체 복무의무위반 건수	65	1,404	1,557	1,957	1,766	2,012
소계	47	987	1,137	1,526	1,311	1,281
%	72.3	70.3	73.0	78.0	74.2	63.7
무단지각	33	804	897	1,178	1,017	950
무단조퇴	14	183	240	348	294	331

7)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지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3. 제33조제2항제7호, 제33조의10제2항제8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3조의10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개정안은 연장복무, 경고처분 누적에 따른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요원의 무단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이탈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관리 특성(출퇴근 근무)과 무단이탈 발생 빈도 등을 고려⁸⁾할 때 일정 부분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같은 보충역 중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예술·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과의 제재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재 4회 이상의 경고처분 사유는 근무 방해·선동, 정치운동 금지 위반, 가혹행위,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력행위, 영리행위 등 복무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단순 무단이탈을 이와 한 단계 아래의 제재에 위치시키는 것이 위반 행위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제재의 비례성과 균

8) 다만, 최근 5년간 대체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무단지각·무단조퇴를 사유로 경고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음.

형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고처분 사유	경고처분 횟수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32조의3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회복지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4회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	8회→5회

□ 국방부 및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의무위반 중 무단이탈의 발생건수가 많고,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요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경고처분을 받은 총횟수를 축소하여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